

연관사업

주거취약계층 **이사비** 지원사업

사업개요

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공공 혹은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주에 필요한 비용 지원

지원대상

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 혹은 민간주택으로 이주 한 자 (전입 후 3개월 이내 신청가능)

지원내용

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(이사비, 생필품) 실비지원

※ 생필품 불인정 품목: 술, 담배, 의류, 진료비, 외식비, 주유비, 사치품, AS비, 시공비 등

신청기간

연중 상시 (예산 소진까지)

신청방법

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추진배경

- 주거지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 과정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주거상향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이 필요

사업내용

- 쪽방·고시원,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자가 공공·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방문 상담 및 지원

사업대상

-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 시설, 컨테이너, 움막 등, PC방, 만화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 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,
- 시장 등이 홍수,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 및 옥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
- 출산 예정인 미혼모,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

※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에 근거하여 공공·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

사업 대상지

- - (1순위) 병점1동, 병점2동, 진안동, 화산동
- - (2순위) 1순위를 제외한 관내 지역

신청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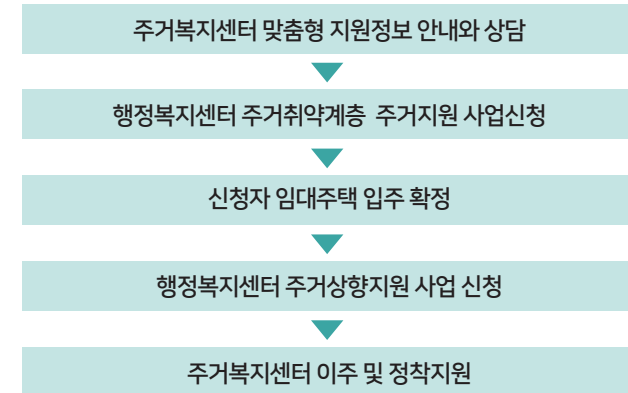
- 연중 상시 (예산소진까지)

신청방법

-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

지원절차



주요내용

✦ 주거상향 지원사업 안내 및 방문상담

✦ 주택물색·이주지원

- (이주지원) 개보수 지원(도배·장판, 조명·블라인드, 청소 등)
- (이사지원) 공공주택 주택입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복 임대료 1개월분 지원

✦ 임시거처 운영

- (임시거처) 임대료, 집기류, 공과금, 수선비 등
- (기초생활 지원) 생필품, 식료품, 기초 의약품 등 현물 지원

✦ 정착지원·사례관리

- (생활안정 지원) 주방용품, 가전제품 등 현물 지원
- (주거약자 지원) 장애인·고령자 등 편의시설, 위생시설 관련 현물 지원

✦ 화성 홈 지키미

- (주거안전사업) 전세임대의 경우 범죄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도어록 실비 지원

문의사항

- 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 특례시 주거복지센터 031-5189-3848 / 031-5189-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2025 화성특례시

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



추진배경

- 주거지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 과정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주거상향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이 필요

사업내용

- 쪽방·고시원,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자가 공공·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방문 상담 및 지원

사업대상

-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 시설, 컨테이너, 움막 등, PC방, 만화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 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,
- 시장 등이 홍수,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 및 옥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
- 출산 예정인 미혼모,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

※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에 근거하여 공공·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

신청기간

- 연중 상시 (예산소진까지)

신청방법

-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문의사항

- 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 특례시 주거복지센터
031-5189-3848 / 031-5189-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